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2015.12.

공 정 거 래 위 원 회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정거래위원회 인력 3명과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인력 1명을 감축하되,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·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내용으로 「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 호, 2015. . 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, 감축되는 인력을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 :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5. 12. 9. ~12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중 총계 “391”을 “38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85”를 “382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128”을 “126”으로, 행정주사 “92”를 “91”로 한다.

별표 2의2 중 총계 “391”을 “388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385”를 “382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“136”을 “134”로, 행정주사 “83”을 “82”로 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143”을 “14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43”을 “142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 “26”을 “25”로 한다

별표 2의2 중 총계 “143”을 “142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143”을 “142”로 하며, 행정주사보 “26”을 “25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원 3명(3급 또는 4급 이하 3명)과 그 소속기관 정원 1명(4급 이하 1명)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2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	감
총	계		391		388	-3	
		·	·		·		
		·	·		·		
일반직	계		385		382	-3	
		·	·		·		
		·	·		·		
행정사무관			128		126	-2	
		·	·		·		
		·	·		·		
행정주사			92		91	-1	
		·	·		·		
		·	·		·		

[별표 2의2]

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391</u>	<u>388</u>	-3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385</u>	<u>382</u>	-3
·	·	·	
·	·	·	
행정사무관	<u>136</u>	<u>134</u>	-2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	<u>83</u>	<u>82</u>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3]

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2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43</u>	<u>142</u>	-1
일반직 계	<u>143</u>	<u>142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	<u>26</u>	<u>25</u>	-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3의2]

지방공정거래사무소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2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143</u>	<u>142</u>	-1
일반직 계	<u>143</u>	<u>142</u>	-1
·	·	·	
·	·	·	
행정주사보	<u>26</u>	<u>25</u>	-1
·	·	·	
·	·	·	